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안 번호	246
----------	-----

제출년월일 : 2020.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I. 제안이유

2019회계연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II. 주요내용

1. 결산개요 :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 “별첨”

2. 세입·세출결산

가.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가)	전년도 이월액(나)	예산현액 (다=가+나)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라	라/다	마	마/다	바=라-마	바/다
합 계	549,443	77,261	626,704	640,249	102	518,499	83	121,750	19
일반회계	499,751	65,195	564,946	575,273	102	464,375	82	110,898	20
특별회계	49,692	12,066	61,758	64,976	105	54,124	88	10,852	18

나.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가)	전년도 이월액(나)	예산현액 (다=가+나)	징수 결정액(라)	실제 수납액(마)	불납 결손액(바)	미수납액 (사=라-마-바)	비율(%)	
								마/다	마/라
합 계	549,443	77,261	626,704	646,062	640,249	1,158	4,655	102.2	99.1
일반회계	499,751	65,195	564,946	580,628	575,273	1,158	4,197	101.8	99.1
특별회계	49,692	12,066	61,758	65,434	64,976	0	458	105.2	99.3

### 다.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 증감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지출액 (라)	다음연도 이월액(마)	보조금 반납액(바)	집행잔액 (사)=(다)-(라)-(마)-(바)
합 계	549,443	77,261	626,704	518,499	92,886	3,921	11,398
일반회계	499,751	65,195	564,946	464,375	85,834	3,892	10,845
특별회계	49,692	12,066	61,758	54,124	7,052	29	553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833백만원을 포함

### 라.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121,750	92,053	59,371	14,547	18,135	3,930	25,767
일반회계	110,898	85,001	56,122	14,547	14,332	3,901	21,996
특별회계	10,852	7,052	3,249	0	3,803	29	3,771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833백만원을 포함하지 않음.

### 마.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32건 1,344백만원
- 예산이체 : 45건 3,352백만원

### 바. 예비비 지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비비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1,921	658	207	428	23

### 사. 채무부담행위

(단위:백만원)

조직	과목		승인일자	계약일자	채무부담 행위승인액	채무부담 행위액	상환조건
	세부사업	통계목					
일자리 경제과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보조)	시설비	'18.12.11	'19.12.17	4,800	4,800	전액 국비사업 연차별 지원

### 3. 기금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b>합 계</b>	<b>23,275</b>	<b>110</b>	<b>3,620</b>	<b>3,510</b>	<b>23,385</b>
평창군통합관리기금	8,145	△1,980	139	2,119	6,165
평창군사회복지기금	7,910	830	902	72	8,740
평창군체육진흥기금	4,498	△124	86	210	4,374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27	△16	39	55	111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60	60	0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029	351	1,345	994	1,380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58	27	27	0	85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508	1,022	1,022	0	2,530

### 4. 재무제표

(단위:백만원)

구분 회계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일반회계	2,812,734	38,467	2,774,267	346,979	483,314	(136,335)
기타특별회계	232,734	1,226	231,508	21,560	18,214	3,346
기금회계	25,226	6,026	19,200	1,510	3,614	(2,104)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57,177	3	257,174	14,737	7,399	7,338
내부거래	(128,457)	(11,937)	(116,520)	(13,482)	(13,482)	0
<b>합 계</b>	<b>3,199,414</b>	<b>33,785</b>	<b>3,165,629</b>	<b>371,304</b>	<b>499,059</b>	<b>(127,755)</b>

## 5. 성과보고서

(단위: 개)

부서명	성과목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b>합 계</b>	<b>19</b>	<b>69</b>	<b>135</b>	<b>27</b>	<b>70</b>	<b>38</b>		
기획담당관	1	2	8	1	7	0		
총무담당관	1	4	7	2	4	1		
행정 지원 국	올림픽기념사업과	1	1	3	1	2	0	
	주민복지과	1	10	18	1	9	8	
	종합민원과	1	2	2	0	2	0	
	재무과	1	2	3	0	3	0	
	허가과	1	2	2	0	1	1	
	교육체육과	1	5	9	2	6	1	
경제 건설 국	문화관광과	1	4	12	2	2	8	
	일자리경제과	1	6	9	2	3	4	
	환경위생과	1	5	6	0	4	2	
	산림과	1	2	7	2	3	2	
	안전건설과	1	6	14	5	5	4	
	도시주택과	1	4	8	3	3	2	
	시설관리과	1	2	5	2	2	1	
보건의료원	1	4	6	1	4	1		
농업기술센터	1	5	12	3	7	2		
의회사무과	1	1	1	0	1	0		
상하수도사업소	1	2	3	0	2	1		
읍·면	0	0	0	0	0	0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